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설치 항만	자재 비치기준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 (m)	유흡착재 (kg)
최고위험도 항만 (광양, 대산, 울산)		1,000	2,000
고위험도 항만 (부산, 인천, 군산)		800	1,000
중위험도 항만 (평택·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 산, 옥포, 제주, 동해·묵호, 옥계, 보 령, 삼천포, 호산, 장항, 여수, 진해, 완 도, 통영, 서귀포, 속초, 장승포, 삼척, 하동)		500	500
저위험도 항만 (경인, 서울,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 및 국가어항)		200	200
비고 1. 최고위험도 항만 및 고위험도 항만에서는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 장치 B형과 C형을 혼합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